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3-9190  
의사국 의사국장 오윤수 [100] 법제팀장 이성민[120] 대리 김상구 [121]/E-mail: kimgu@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10-4692호

시행일자 2011. 9. 6.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노인복지관 불법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7,8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를 두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촉탁의를 두지 않고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가 동 시설의 방문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 온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우리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기존까지 해석이 다소 모호했던 붙임 1과 같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민원Q&A(복지부 홈페이지 게재)를 붙임2와 같이 명확하게 바로잡는 한편, 동건 관련 네이버 지식iN에 잘못 기재되어 있던 내용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NHN 측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붙임3과 같이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붙임 3)(2011.8.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인터넷민원질의 2AA-1108-024820)을 받아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동 시설의 방문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

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 온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없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한편 우리협회는 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의 부적절한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 및 계도(관련 협회 및 복지관에 대한 계도 등)를 해 줄 것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측에 재차 요청하였고(공문 및 인터넷 민원), 동시에 최초 이 문제가 발생한 A시 노인복지관 관할 보건소 측에도 이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귀회에 동건 관련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등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홍보하시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가능하다면 귀회 인근 지역의 노인복지관 등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붙임 : 1) ‘물리치료처방전발급 시행관련법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국민신문고 Q&A 수정본 1부  
3)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범위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19개 개의원의협의회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 <물리치료처방전발급 시행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별표7],[별표8]에 의하여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사를 두어야하고,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축락의 등 의사의 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도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보건소 또는 의원, 병원 등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동 의사 지도(처방전)에 따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 민원** Civil complaint
- 자주하는민원
  - 민원신청
  - 나의민원확인
  - 인 · 허가민원신청
  - 의료인면허민원
  - 부정 · 비리신고센터
    -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
    -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 · 포상금제
    - 의약품 유통 부정·비리 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민원행정서비스현장

HOME > 민원 > 자주하는 민원 | **회면민원**

### 자주하는민원

민원 Q&A 정책 Q&A

**Q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  
2011.07.20 15:46:33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물리치료가 가능한가요?

o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별표8]에 의하여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를 두어야하고,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사용하여야 한다.

o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속락의 등 의사의 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도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第37條(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컨텐츠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목록

- 빠른 서비스 QUICK MENU**
- 민원신청
  - 조직도
  - 직원검색
  - 오시는길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부정·비리 신고센터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108-008338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진행상황통보방식	SMS(문자)		
이메일		나의민원확인방식	간편형
신청일	2011.08.03. 14:08:48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의사의 물리치료 지도범위 관련
민원내용보기	
<p>수고가 많으십니다.</p> <p>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물리치료를 행하고자 합니다.</p> <p>하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옆 건물에 물리치료실을 두고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시행시킬까 합니다.</p> <p>문제 없을까요? 의사의 지도에 포함될까요?</p> <p>한편 최근 노인복지관 등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물리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p> <p>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등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행할려면 축탁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p> <p>축탁의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p> <p>해당 복지관은 단지 근처에 있는 의원에게 물리치료 처방전(법상 규정은 없습니다.)을 발부받아..</p> <p>이를 지도라고 하여 물리치료사를 통해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이러한 행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p> <p>법원은 판례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 범위를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요?</p> <p>미리 감사드립니다.</p>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정미희 (02-2023-7304)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8-008338
접수일	2011.08.03. 14:13: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8-024820
처리에정일	2011.08.1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차 답변일	2011.08.10. 15:24:51		
처리결과 (1차 답변내용)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가능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허용된 업무범위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때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